- 1. 대외지급수단매매답변외국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의 경우로 대외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'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'를 한 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외지급할 수 있음 •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원화예금·신탁계정관련 원리금 • 외국인 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(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및 송금된 자금으로 취득한 국내 부동산 제외) • 비거주자간 거래와 관련한 비거주자의 담보. 보증 제공 후 국내재산 처분대금(교포여신 대지급의 경우 제외)•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화자금 • 비거주자가 거주자와의 부동산임대, 금전차입 등을 통해 취득한 원화자금 • 외국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일정 범위를 초과(예 : 국내에서의 환전실적을 초과하는 재환전 등)하는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자금 재외동포 재산 반출 절차 비거주자가 재외동포 * 인 경우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다음 국내재산(재외동포 자격 취득후 형성된 재산포함) 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'자금출처확인서'등을 제출하고 동 은행을 통하여 대외반출할 수 있음 *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• 부동산처분대금(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) • 국내예금·신탁계정관련 원리금. 증권매각대금 •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• 본인명의 부동산 임대보증금
 -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원화예금·신탁계정관련 원리금
 - 외국인 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(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및 송금된 자금으로 취득한 국내 부동산 제외)
 - 비거주자간 거래와 관련한 비거주자의 담보, 보증 제공 후 국내재산 처분대금(교포여신 대지급의 경우 제외)
 - •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화자금
 - 비거주자가 거주자와의 부동산임대, 금전차입 등을 통해 취득한 원화자금
 - 외국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일정 범위를 초과(예 : 국내에서의 환전실적을 초과하는 재환전 등)하는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자금
 - 부동산처분대금(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)
 - • 국내예금·신탁계정관련 원리금, 증권매각대금
 -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
 - 보인명의 부동산 임대보증금